

‘19년 출제 문제	‘19년 모의고사(학원) 등 기출문제	비고
<p>[1] A시의 甲구청장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려고 하였다. 이를 위해 청문통지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청문통지서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었다. 이에 甲구청장은 乙이 청문기일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생략하고 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. 甲구청장의 乙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. (40점)</p>	<p>[1](8/24, 모의고사) 집배원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한 우편물을 수령한 빌딩건물경비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주(甲)나 그 동거인 또는 고용인에게 위 청문서를 전달하였다고 볼수 없는 경우 영업주(甲)가 청문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청문절차에 불출석하였는데도 불응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청문절차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한지 논하시오.(40점) [1-1](8/10, 일일특강) 甲구청장은 乙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乙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자 한다. 청문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지 논하시오.(40점)</p>	<p>[1] 8/10 일일특강 [2] 8/24모의고사 출제 [3] 적중도: 100%(자가진단)</p>
<p>[2]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, 기능 및 조사·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. (20점)</p>	<p>[2](8/10, 일일특강) 행정규제기본법 ‘규제개혁위원회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.(20점) [2-1](9/8, 모의고사출제) 행정규제기본법 ‘규제개혁위원회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.(20점)</p>	<p>[1] 8/10 일일특강 [2] 9/8 모의고사 출제 [3] 적중도 : 100%(자가진단)</p>
<p>[3]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. (20점)</p>	<p>[3](교재p 90) EX)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와 제23조 민감정보에 대해 서술하시오. (참조) ★ I .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“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”를 말한다.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(手記)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개인정보도 사망 후</p>	<p>[1] 8/18 전국모의고사+ 교재p90 [2] 8/24 실천모의고사(서브문제) [3] 적중도 : 50% 미만(자가진단) 출제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출제한 적은 없으나 ①교재p90(개인정보 개념)과 ②모의고사(8/18, 8/24)의 “정보주체의 권익보호”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연결해야 풀수 있는 문제로 본 강사의 입장에서는 불의타 문제로 분석됩니다. [3](교재p 90) ① 개인정보의 개념 EX)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와 제23조 민감정보에 대해 서술하시오.(참조) ★개인정보:</p>

	<p>일정한 기간은 보호하도록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. 다만, 사자의 개인정보도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은 보호하도록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.</p> <p>[3-1] (8/18전국모의고사 및 8/24 실전모의고사 서브문제 출제) 개인정보보호법상 “<u>정보주체 권익 보호</u>”에 대해 서술하시오. (40점)</p> <p>I. 개인정보 수집 출처 II. 개인정보 처리 요구처 등 고지 III. 개인정보 처리 요구 IV. 개인정보 정정·삭제 V. 개인정보 처리정지 ★VI. 손해 배상 청구 (법 제39조)</p> <p>(1)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(2)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</p>	<p>[3-1] (8/18전국모의고사 및 8/24 실전모의고사 서브문제 출제) 개인정보보호법상 “<u>정보주체 권익 보호</u>”에 대해 서술하시오. (40점)</p> <p>: 모범답안 중 손해배상청구 목차 구성</p> <p>②★ 손해 배상 청구(법 제39조)</p>
<p>[4]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및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. (20점)</p>	<p>[4] <교재 p218> EX)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.</p> <p>[4-1] [(8/31, 모의고사)] ‘행정절차의 하자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. (40점)</p> <p>II.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</p> <p>1. 학설</p> <p>(1) 소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취소할 수 없고,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.</p> <p>(2) 적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.</p> <p>(3) 절충설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의 하자로 취소할 수 없고,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기본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.</p>	<p>[1] 교재: p218+ 절차하자독자적위법성 여부(p187,p190 등) [2] 실전모의고사(8/31, 서브문제) [3] 적중도 : 50% 이상(자가진단)</p> <p>출제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출제한 적은 없으나 ①교재p218(행정조사 기본원칙)과②모의고사(8/31)의 “<u>행정절차의 하자</u>” 부분을 연결해야 풀수 있는 문제로 본 강사의 입장에서는 불의타 문제로 분석됩니다.</p>

	<p>2. 판례</p> <p>판례는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 행위에 있어서도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.</p> <p>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은 설령 실체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.(대판 2001.5.8, 2000두10212[시정명령 등 취소]).</p> <p>3. 검토</p> <p>현행 행정소송법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판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절차중시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.</p>	
--	---	--